

2013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 공고

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16일
안전행정부장관

1. 계획 개요

가. 목적

-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·관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
- (정 부) 민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,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제고
- (민 간) 공무원의 법령지식과 정책경험을 기업 경영에 활용

나. 민간기업 등의 범위

- 상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(상법 제614조에 의한 국내에 대표자를 정하고 있는 외국회사 포함)으로서 국내소재 법인
-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·협회로서 국내소재 기관

2. 세부 시행계획

(1) 기본 방침

- 대상기업은 대기업, 로펌 등을 제외하고, 중견·중소기업 위주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운영
- 대상공무원은 공직 복귀 후에도 장기간 공직에 근무할 것이 기대되고, 민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초급 관리자와 기술직 공무원 등을 선발
- 공무원이 민간근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조건 설정과 복무관리 철저

(2) 운영 방안

가. 휴직기간

-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하되, 총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

나. 휴직공무원 보수

- 휴직직전 보수의 1.3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휴직공무원이 휴직대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함

다. 민간기업 등 선정시 주요 기준

- 민간기업등의 범위 충족여부
- 보수수준·근로조건·채용직위·기타 처우상의 적정성
- 채용 공무원에게 부여할 업무의 적정성(인·허가 업무 배제 등)
- 복리후생 제공의 적정성
- 납세·사회적 물의 등 휴직대상기업으로서의 적정성 등

□ 제외대상

- i) 공직유관단체(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)
*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매반기별로 지정 고시
- ii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(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)
- iii) 금융지주회사(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)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(동법 제4조제1항제2호)
- iv) 법무법인(변호사법 제40조), 법무법인(유한)(동법 제58조의2), 법무조합(동법 제58조의18), 법률사무소(동법 제89조의6제3항)
- v) 회계법인(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), 세무법인(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)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(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)
- vi)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민간기업등

다.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

- 추천일 현재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일반직 4~7급 및 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(8~3등급)
- 연령은 2013.12.31. 기준으로 4·5급은 48세 이하(‘65.1.1.이후 출생자’), 6·7급은 45세 이하(‘68.1.1.이후 출생자’)인 공무원

□ 제외대상

- i) 추천일 前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인·허가, 직접적인 감독 등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무원
* ‘밀접한 관련성’ 여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을 준용
- ii)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거나, 민간근무 휴직을 하였던 공무원

라. 휴직대상 공무원 심의 기준

- 휴직공무원의 자격요건·발전가능성·복귀 후 기여도
- 휴직 前 5년동안 소속부서(課) 업무와 휴직 대상기업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(인·허가, 직접적인 감독, 재정보조 제공 등)
- 민간근무 시 담당할 직위·업무의 적정성(인·허가 업무 배제 등)
- 휴직 대상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(친족관계, 사적이해관계 등) 등

바. 운영실태 점검

-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, 반기별로 업무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통보
-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시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·평가

(3) 운영 절차

가. 채용 신청 (민간기업등 → 안전행정부)

-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등은 채용계획서, 기업소개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안전행정부에 신청·접수

나. 기업 채용수요 통보 (안전행정부 → 각 부처)

- 안전행정부는 채용희망 민간기업등의 현황과 채용요건, 보수 등 채용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, 홈페이지 등에 게시

다. 휴직대상공무원 추천 (휴직 희망공무원 → 소속부처 → 안전행정부)

-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처에 휴직 신청
- 소속장관은 자체 추천위원회*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해당기업·직위별로 적합한 공무원을 안전행정부에 추천
- 휴직공무원 추천서, 요건심사서, 수행계획서 등 제출
* 직무피견심의위원회를 준용 :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3~9명 이내로 구성

라.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심의선발

- 안전행정부부는 부처별로 제출된 민간근무휴직 신청에 대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
 - 대상기업 및 휴직대상 공무원의 자격요건, 보수기준 등 심의
- 안전행정부부는 최종 선발결과를 부처 및 해당기업에 통보

마. 채용계약 체결 및 결과 통보 (소속부처 → 안전행정부)

- 최종 선발된 휴직대상공무원은 해당기업과 보수 및 근로조건에 관한 채용계약(안)을 작성, 소속장관에게 제출
- 소속장관은 채용계약(안)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1년의 범위내에서 휴직을 실시하고, 안전행정부로 결과 통보
 - 휴직공무원은 휴직전 사이버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'공직자윤리서약서'를 소속장관에게 제출

3. 향후 일정

- '13. 5월 : 공무원 채용 희망기업 신청·접수(~6.7)
 - ※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은 [별첨1] 참고
- '13. 6~7월 : 기업 수요 부처통보 / 휴직공무원 추천(부처→안행부)
- '13. 8월~9월초 : 휴직대상기업·휴직공무원 심의·선발 / 최종 선발결과 부처·해당기업 통보
- '13. 9월말 : 채용계약 체결 / 휴직 실시

[별첨 1]

민간근무휴직 관련 구비서류 안내

1. 채용신청 (민간기업등 → 안전행정부장관)

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등의 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,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기한 내 제출

- ① 공무원채용계획서(붙임 1) 1부
 - * 채용계획서중 다음사항은 별지로 구체적 작성(서식 없음)
 - (채용이유, 직무난이도·직급 등이 유사한 타직원과의 보수수준 비교, 담당직위 및 업무사항, 복리후생 제공계획 등 기타 필요사항)
- ② 기업소개서(자산·연간매출액, 임직원·조직도 등) 1부(서식 없음)
-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④ 기업의 복무규정 1부
- ⑤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
- ⑥ 공무원채용계획 제출시 확인사항 1부

※ 안전행정부에 e-mail 및 직접·우편(등기)으로 신청

- e-mail : naryjiyoun@korea.kr ☎ 2100-1728
- 주소 : (110-76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(세종로) 정부중앙청사 1110호(심사임용과)

2. 민간근무 휴직대상자 추천 (소속장관 → 안전행정부장관)

민간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는 부처의 소속장관은 적정 대상자를 선정,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기한내 추천

① 추천서식

기 관 명

인사담당관 확인 (인)

휴직대상기업		소 속 (실·과)	직 위 (직급)	성 명 (생년월일)	성 별	실근무 경 령	비고
기업명	부서						

- ②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서 1부(붙임2)
- ③ 휴직대상공무원 요건심사서 1부(붙임2)
- ④ 휴직 前 5년간 소속부서(과) 주요 업무

소속부서(과)	근무기간	소속부서 주요업무
(작성 예시) 인사정책과	'07.5.1~'10.12.31 (3년8월)	▶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 운영 및 제·개정 검토 ▶ 명예퇴직제도 운영(본인) ▶ 전문직위제도 운영 및 조사 연구 ▶ 인사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(본인)
심사임용과	'11.1.1~현재 (1년 4월)	▶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(본인) ▶ 고위공무원임용심사 운영 및 관련 자료 조사 ▶ 인사교류제도 수립 및 시행 ▶ 파견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▶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정 처리

□ 러거부터 현재까지 개조식으로 작성하되, 본인 담당업무는 "(본인)"이라고 표시할 것

- ⑤ 민간근무휴직 신청서 1부(붙임2)
- ⑥ 휴직예정공무원의 자기소개서 및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각 1부(서식없음)
 - * 자기소개서(주요 경력,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)
 - * 민간근무수행계획서(민간근무 필요성, 휴직 복귀 후 활용계획 등)
- ⑦ 최근 3년간('10~'12년)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1부
- ⑧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2013년도 보수 상세내역
- ⑨ 추천공무원 자격증 사본(해당자) 1부
- ⑩ 자체추천위원회 의결서 1부

※ 첨부서류

1. 민간근무휴직신청서 사본
2. 자기소개서 및 민간근무 수행계획서 사본
3. 최근 3년간(10~12년)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사본
4.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2013년도 보수 상세 내역
5. 자격증 사본(해당자)
6. 자체추천위원회 의결서 사본

※ 작성요령

1. 관련경력기간란에는 기업에서 제시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총 근무경력기간을 기재한다.
2. 관련경력란에는 기업에서 제시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총 근무경력기간에 해당하는 주요 근무경력을 기재하고, 담당 업무란에는 수행한 주요 업무 내용을 기재한다.
3. 신청기업 및 근무조건란(기업등 채용계획)은 안전행정부가 통보한 "민간기업등의 공무원채용계획서"를 기초하여 기재한다.
4. 추천공무원의 적정성 검토란에는 각각의 항목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다.

휴직대상공무원 요건심사서

인적사항	소속 : _____	직위 : _____	
	직급 : _____	성명 : _____	
민간근무 공무원의 자격성	자격요건	직급, 연령, 근무경력	해당유무/ 적격여부
		'휴직전 5년 이내 소속부서' 업무와 휴직대상 기업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유무	
		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급·장려급·조성급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 제공 여부	
		②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	
		③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	
		④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	
		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지 여부	
		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한 바가 있는지 여부	
		⑦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지 여부	
		⑧ 그 밖에 업무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지 여부	
발전 가능성	민간의 경영기법 및 업무수행방법의 습득		
	민간기업에 대한 이해 및 정책협조 강화		
	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험의 확대		
민간기업 과의 이해관계	임원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지와의 친족관계 여부		
	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 가능 여부 등		
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이행 가능성			
년 월 일			
작성 및 확인자			
○○ 부	직급	성명 (인)	

민간근무휴직신청서

공무원 인적사항	부서명		
	성명		직급(직위)
	생년월일		
	최초임용일		현재임용일
	담당업무 고용휴직 실시현황		
휴직 신청기업 개요	기관명		대표자
	주소		
	전화번호		
	부서		직위(보직)
	고용기간		근무지역
	근무시간		보수
휴직사유 및 활용계획서	복리후생		기타
	<p>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해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자 성명 : _____ 인 (서명)</p>		